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 25호, 2004. 6. 30)

총 무 위 원 회
2004. 7. 30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6. 30 : 사천시장 제출
나. 2004. 7. 8 : 총무위원회 회부
다. 2004. 7. 29 : 제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(기획담당관 최학림)

가. 개정 이유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,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, 기업유치지원금 융자대상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적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.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삭제(안 제2조제5호)

2).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조건중 자구수정(안 제6조)
  ◦ 1인당 → 1가구당

3). 법령인용 조항 정비(안 제4조)
  ◦ 전기사업법 제17조 → 전기사업법 제16조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◦ 본 개정조례(안)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4항(주민복지지원사업)이 2001. 2. 24 개정 되므로서 이와 관련된 조항인 제2조와 제6조를 개정하고 제4조제2호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 중 전기사업법관련조항의 적용을 바로잡기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
◦ 본 개정조례(안)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구 의견 : 없음